

의정활동보고서

제170회 임시회 (2002. 7. 9 ~ 7. 1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원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
김국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제7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과 제170회 임시
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제7대 도의회 출범은 지난 10년 이상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단계를 지나
이땅에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
기도 하지마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
해 헌신봉사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처음 구성한 제7대 경상북도 의회는 300만 도
민의 삶과 질, 그리고 미래를 알차게 설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제4대 도의회를 비롯한 5대, 6대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들에
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은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 의회운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열심히 뛰어볼 각오입니다.

첫째,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0년이 지난 제4기 째를 맞이 하는 이번 도의회에서는 지난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지방자치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자치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불황과 긴축재정, 구조조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여건이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슬기롭게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견제와 협조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의 고유권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 감독과 견제를 통한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의 기본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민대표기능과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도민들의 대표가 된 우리 의원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 앞에서 철저한 봉사정신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도움을 받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믿음과 신뢰가 가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로 이미 의장단 구성은 잘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오는 12일에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천하겠습니다만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있는 의사진행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개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7. 9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개 황	
II.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VI. 5분자유발언

부 록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0회 임시회는 2002년 7월 9일 개최하여 7월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21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7월 9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대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 5시에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7월 10일 오전 11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하였고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도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휴회하였다.

7월 12일 오전 11시에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감사선임을 위하여 정회하였다. 정회중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1인을 선임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감사선임보고와 상임위원장, 감사의 인사를 청취 후 휴회하였다.

7월 19일 오전 11시에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손경찬·한혜련의원)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 관한조례안, 경상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한·중마늘협상과관련한건의안을 의결하였으며,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을 유보한 후 제170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나. 집회공고일 : 2002. 7. 2

다. 개 회 일 : 2002. 7. 9(화) 14:00

라. 폐 회 일 : 2002. 7. 19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7. 9 ~ 7. 19 (11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4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예결 특위
금회	21	2	3	3	3	4	3	3	
누계	21	2	3	3	3	4	3	3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2.7.9(화) 14:00	1. 의장·부의장 선거 · 의 장 : 최원병 · 부의장 : 김선중, 정무용 ※ 17:00 개원식	제 1 차
7. 10(수) 11:00	1. 제17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주요업무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제 2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7. 12(금) 11:00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상임위원장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 손규삼 의원 - 기획위원장 : 박성만 의원 - 행정사회위원장 : 김희문 의원 - 교육환경위원장 : 신영호 의원 - 농수산위원장 : 방대선 의원 - 산업관광위원장 : 최영욱 의원 - 건설소방위원장 : 이 달 의원 3.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	제 3 차
7. 19(금) 11:0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 관한조례안 4.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한·중마늘협상과관련한건의안 6.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제 4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유 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3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 장대진 위원	제 1 차
7. 16(화) 16:00	1. 제171회임시회 회기협의 2. 예결특위구성결의안 3.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제 2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0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 장하숙 위원	제 1 차
7. 15(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제 2 차
7. 16(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 3 차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0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 이현준 위원	제 1 차
7. 15(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2 차
7. 16(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경도대학, 자연환경연원 소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심사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3 차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0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 김순견 위원	제 1 차
7. 15(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 2 차
7. 16(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도 교육청 소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심사 ○ 경상북도교육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3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0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정상진 위원	제 1 차
7. 15(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농수산국 소관	제 2 차
7. 16(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제 3 차
7. 19(금) 10:00	<input type="checkbox"/> 건의안 ○ 한·중마늘협상과관련한건의안	제 4 차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0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 김석호 위원	제 1 차
7. 15(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경제통상실 소관	제 2 차
7. 16(화) 14: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 3 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고
2002.7.12(금) 16:00	<input type="checkbox"/> 간사선임의견 ○ 간사 : 황상조 위원	제 1 차
7. 15(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건설도시국 소관	제 2 차
7. 16(화) 11:0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소방본부 소관 <input type="checkbox"/>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 의견취의건	제 3 차 의견제시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6 (6)	5 (5)	5 (5)			1 (1)		
조 례 안	소계	3 (3)	3 (3)	3 (3)				
	의회 제안							
	도지사 제출	1 (1)	1 (1)	1 (1)				
	교육감 제출	2 (2)	2 (2)	2 (2)				
예산안								
동의·승인								
건의안								
결의안	1 (1)	1 (1)	1 (1)					
기타안	2 (2)	1 (1)	1 (1)			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	-	-	-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3)			1 (1)	1 (1)			1 (1)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1 (1)			1 (1)						
교육환경										
농 수 산	1 (1)				1 (1)					
산업관광										
건설소방	1 (1)							1 (1)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3 (3)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1 (1)
교육환경						
농 수 산						1 (1)
산업관광						
건설소방						1 (1)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2. 7. 4)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2. 7. 4)
경상북도지사 (2002. 7. 4)	2020년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 청취의견	건설소방 (2002. 7. 4)
경상북도지사 (2002. 7. 6)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	각상임위 (2002. 7. 8)
경상북도교육감 (2002. 7. 3)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2. 7. 4)
경상북도교육감 (2002. 7. 3)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2. 7. 4)
경상북도교육감 (2002. 7. 4)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견	교육환경 (2002. 7. 6)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2. 6.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2002. 7. 4

VI. 5분자유 발언

□ 제4차 본회의

손 경 찬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영덕 제2선거구에 출마한 손경찬 당선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신청한 동기는 저는 어릴 때 경북영덕 백석리에서 태어나 한 살 때 아버지를 여의습니다. 11살 때 저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시골에 다니면서 이집 저집 문전걸식하면서 항상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제가 성공을 해서 꼭 저에게 밥을 준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20년간 저는 사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0년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회기관단체에 공로감사패를 56회를 받았고, 장관표창을 3회를 받았고, 대통령 표창을 1회를 받으면서 나이 31살때는 사회봉사 부분에 국민훈장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나이에는 기초의원에 당선되어서 영덕군의회에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였고, 지난번 6.13지방선거때는 불철주야 농사일을 하면서 모심기를 같이 하면서 저는 표를 얻으려 당선을 시켜 달라고 마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 중 우리 경상북도지사님께서도 영덕군에 정당연설회에 와서 본 후보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경상북도 300만 도민을 위해서 대변하고자 이곳을 찾아 왔는데 지난번 파크호텔 당선자대회에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께서 열화와 같은 이의근도지사님의 성원으로로서 전원이 당선되었으니 다함께 기립박수로 환영하자고 했을때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다 함께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례로 이의근도지사는 여러분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조선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의근도지사 취임식때 타사회자가 이의근지사님이 입장하실 때 전원이 기립박수로 환영을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은 스스로 4년동안 도정을 잘 해달라고 스스로 기립박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기립박수를 유도해서 저희들 전원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4년동안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300만 도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과연 제 발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일이 너무나 많았고 저는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의 대가로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주었고, 당연히 그래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저는 조선의원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300만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또 하나는 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제도개선이 되어서 우리 의회는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같이 상호 협력하여 무엇인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혜 련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혜련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00만 도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고뇌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중차대한 책무를 부족하고 무력한 사람이 과연 부끄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무리없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불협화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를 분노와 실망으로 들끓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독점하여 전횡하는 것은 반민주 주장이며, 그 어느 사회 악보다 비겁하고 황포스러운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면서도 내용적으로 권력을 무기로 부당한 축적을 도모하는 행위는 바로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기본 권능을 도륙하는 그릇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주의나 파시즘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마치 신권처럼 휘두르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군부독재 보다 더 비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국정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지탄을 받아야

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행정당국은 이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청 개념의 정치권은 분명할지니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떤 형태로든 피할 수 없으며, 되돌아보고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 초년생으로서 서툰 삶을 살아온 미진한 입장이지만 감히 제 소신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는 도민의 선택자가 아니라 위탁인으로서 모든 도정을 도민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하고 공리공영에 정성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위해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입장으로든 정당정책을 초월하여 존경받는 의회상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활동을 펼쳐서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를 창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듯이 단합과 하나된 모습이 되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초행자가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다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3건
- 결의안 : 1건
- 건의안 : 1건

□ 조례안 : 3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7.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92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7.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포항분원장,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 및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 그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2. 과학교육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재·교구의 종류 및 기준 설정
5. 그밖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과학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과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2. 7.1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1]의 『명칭 및 위치』란중 “안강 북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후초등학교연곡분교장병설유치원,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병설유치원, 화령초등학교송계분교장병설유치원, 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장병설유치원, 금성초등학교조문분교장병설유치원, 안평초등학교도옥분교장병설유치원, 이두초등학교비안분교장병설유치원, 감천초등학교옥천분교장병설유치원, 용궁초등학교장평분교장병설유치원, 봉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연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연일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연일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336-6

[별표2]의 『명칭 및 위치』란중 “김천부곡초등학교”란 다음에 “김천 동신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김천동신초등학교	김천시 신음동 1308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결의안 : 1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2. 7. 1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안, 2003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결산안’, ‘2003년도 예산안 및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추천 2명과 의장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
- 활동기간은 구성시부터 1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건의안 : 1건

- 한·중마늘협상과관련한건의안

한·중 마늘협상과 관련한 건의안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인한 농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 농업이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가고,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한·중 양국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시한을 올해까지로 정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내용이 알려지면서 50만 마늘농가 및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늘농가의 절박한 심정을 도외시 할 수 없어 도의회 차원에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와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 요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이제라도 한·중 양국간에 합의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 합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협상당시에 마늘농가와 농업인들에게 소상히 밝히지 않은 관계책임자를 엄중문책하라.

둘째,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전면 철회하던지, 최소한 국내 마늘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라도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정부의 소극적인 농업정책과 협상자세로 인해 마늘농가가 입게 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

넷째, 도매시장 ‘상장 예외품목’인 마늘을 하루빨리 ‘상장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마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앞으로 예상되는 마늘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수매를 실시하고, 최저 보상가를 마늘농가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

여섯째, 대다수 농업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정과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

일곱째, 국회는 한·중 마늘협상 문제 뿐만 아니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등 모든 농업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라.

2002년 7 월 19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의정활동보고서(제170회 임시회)

2002. 7 인쇄 / 2002.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